

電子文書와 關聯國內外立法의 諸法律問題에 관한 研究*

朴 南 圭*

- I. 序 論
- II. 貿易業務自動化의 先決課題
 - 1. 종이文書와 電子文書
 - 2. 貿易業務自動化의 先決課題
- III. EDI와 關聯 國內外 立法
 - 1. 商慣習의 變遷과 EDI
 - 2. 電子式 船貨證券에 관한 CMI規則과 EDI
 - 3. UNCID와 EDI
 - 4. 우리나라의 貿易事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
- IV. 電子文書의 諸法律問題
 - 1. 眞本確認問題
 - 2. 證據能力問題
- V. 結 論

I. 序 論

오늘날 국제기업의 1차적인 목적은 무역에 의한 이윤추구인데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역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최근 컴퓨터 사용의 보편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역업무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이

* 이 論文은 建國大學校 一般課題研究費支援에 의한 研究論文임

* 建國大學校 社會科學大學 貿易學科 副教授, 經濟學博士, 仲裁人

러한 추세를 工場自動化(Factory Automation:FA)나 事務自動化(Office Automation:OA)에 비유하여 貿易業務自動化(Trade Automation:TA)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무역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문서의 작성과 전달을 통하여 처리하는 방식 대신에 문서에 기록된 정보를 전자문서화하여 컴퓨터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송처리함으로써 문서가 필요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무역서류는 그 종류나 양식이 매우 다양하고 무역절차 또한 복잡하여 범세계적으로 무역서류의 간소화 내지 표준화 작업이 UN/ECE 등 국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작업의 성과와 함께 최근의 컴퓨터 기능의 향상과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서류 대신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 방식의 이용이 기존의 종이문서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내는 물론 무역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EDI방식이 무역업무자동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정보, 통신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의 대중화가 실현됨에 따라 21세기 정보전쟁시대에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어떻게 잘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으며, 기업경영자들은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인 EDI방식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의 무역규모가 93년말로 1,670억 3,600만 달러로¹⁾ 2,000억 달러를 바라보는 현실에서 무역의 80% 이상이 무역업무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교역임을 감안할 때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며,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1991년에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첫째, 전통적인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차이를 특정함으로써 법적용이나 해석에 오류가 없도록 하며

둘째, 최대의 관심사인 EDI방식을 채용할 때 준거법은 무엇이며 이를 규율할 국내외 법률, 규정, 협정, 약정 등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개관한다.

셋째, EDI방식의 도입시에 예상되는 제법률문제를 특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하고 아울러 분쟁발생시에 두려움이나 어려움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EDI방식의 활용 및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1)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1994.10.5, p.8.

II. 貿易業務自動化的의 先決課題

1. 종이文書와 電子文書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는 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로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²⁾ 매도인이 이들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세계적으로 총교역액의 5 - 10%를 점한다고 한다.³⁾ 따라서 무역서류의 종류를 줄이는 무역서류의 간소화 작업, 이들 무역서류의 양식을 통일시키는 무역서식의 표준화 작업, 무역절차의 단계를 줄이는 무역절차의 간소화 작업이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데 필수적이다.

정보전달의 기능, 입증의 기능, 상징적 기능을 갖는 전통적인 무역서류의 이점으로는 안정성, 신빙성, 전통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운송기술의 발달, 특히 선박의 高速化로 인하여 물품의 운송기간은 단축되었지만 선적서류의 우편송달과 서류처리 속도에는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⁴⁾ 물품보다 서류가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체선비용, 보관중 물품의 오손 및 손상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 운송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고속화에 맞먹는 서류의 신속한 이진이 필요하며 이는 EDI에 의해 구현된다. 그러나 텔렉스와 같은 전자통신 방법에 의해 전송된 자료는 구조화된 것이 아니어서 재입력 없이는 가공될 수 없으며 EDI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이점을 기대할 수는 없다.⁵⁾

데이터 통신망을 통하여 표준화된 자료를 컴퓨터끼리 주고 받게 되므로 종전과 같이 거래당 사자들이 일일이 무역유관기관이나 거래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신속히 무역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종래의 전통적인 정보처리의 단점이었던 지연이나 문서처리의 오류, 부정확을 방지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EDI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인 형식으로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자료의 전송을 의미하며 본질은 무서류거래인 것이다」⁶⁾.

2) UNCCISG 제30조

3) Barbo Beer, 「Informatics in International Trade - Harmonization of Standards for Telecommunicated Messages」, The Journal of World Trade Law, Vol.19, No.6, Nov/Dec. 1985, p.570.

4) Paul Todd, Cases and Materials on Bill of Lading(1st ed.), London, 1987, p.334.

5) Margaret A. Emmelhainz,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A Total Management Guide(1st ed.),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93, p.12.

EDI방식을 근간으로 한 무역거래는 법률, 관습, 언어 등을 달리하는 異國의 상인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는 전통적인 거래에서 ①국제물품매매법의 통일화, ②표준계약서의 통일화, ③국제상관습의 해석기준의 통일화 등의 방법⁷⁾으로 무역계약을 표준화 하듯 이들 원칙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貿易業務自動化的 先決課題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생산 및 마케팅 거점을 확립하고 기업경영을 국제화함에 따라 무역거래에서의 EDI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고 EDI의 사용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EDI를 통한 무역업무자동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국내거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역거래의 경우 EDI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간에 주고 받는 전자문서와 그의 통신방법에 대한 표준화 및 통일화가 필요하다.

무역관계서류의 표준화와 통일화 작업은 1960년대부터 UN/ECE를 중심으로 있어왔고 오늘날까지 그 운동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컴퓨터 기술과 데이터 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EDI에 의한 전자문서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서류없는 무역거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EDI사용자 상호간에 데이터의 포맷방법과 전송방법에 관한 합의⁸⁾인 EDI표준이 있어야 한다.

EDI표준은 양식작성표준(formatting standards)과 통신표준(communication standard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식작성표준은 전자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문서,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정보, 정보의 순서와 형태, 정보의 각 부분의 의미 등을 말하며 통신표준은 컴퓨터를 통한 전자문서의 송수신규약으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송할 것인가에 관한 사용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한편 EDI표준을 다시 적용범위와 종류에 따라 특정기업내 또는 그 거래처간에 적용되는 전용표준(proprietary standards), 산업 또는 산업간에 적용되는 공통표준(common standards) 및 UN/EDIFACT와 같은 국제표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6) Ian Walden and Nigel Savage, 「The Legal Problems of Paperless Transac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9.3, p.102.

7) 朝岡良平, 貿易賣買と商慣習, 東京布井出版, 1981, p.79.

8) Margaret A.Emmelhainz, *op.cit.*, p.210.

UN/EDIFACT(EDI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관세협력이사회(CCC) 등의 국제기구의 협력으로 UN산하의 유럽경제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제정한 것으로 1987년 3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EDI국제표준으로 승인되어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용도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⁹⁾ 현재 EDIFACT는 외환금융, 항공, 해상운송, 보험, 관세 및 상역행정 등 각 분야에서 EDI에 관한 세계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역과 운송의 경우에는 EDIFACT 외에 몇가지 표준이 존재하지만 점차 EDIFACT로 통일되어가고 있다.

둘째, 무역은 상관습에 따라 거래물품과 관련된 선화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제반 선적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류거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거래적인 성격의 상관습은 정보처리기술과 데이터 통신의 급격한 발달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예컨대 무역거래의사의 전달수단에서 본다면 서신에서 전보로, 전보에서 Telex 또는 Fax로, Telex 또는 Fax에서 VAN을 이용한 EDI로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상관습이 요구된다 하겠다.

III. EDI와 關聯 國內外 立法

1. 商慣習의 變遷과 EDI

(1) Incoterms 1990 와 EDI

무역거래에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1936년에 최초로 제정된 Incoterms는 그 후 무역제도의 진전에 따라 1953년, 1967년, 1980년, 1990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Incoterms 1990이 개정된 중요한 이유는 무역거래에서 전자문서교환방식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무역거래조건에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¹⁰⁾ Incoterms 1990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유통성선화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그에 상응하는 EDI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년 이전의 Incoterms는 종이문서의 교환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Incoterms 1990

9) 정상직, 무역사무자동화론, 형설출판사, 1993, p.566.

10) Jan Ramberg, Guide to Incoterms 1990, ICC, p.8

에서는 EDI 관습과의 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무서류거래 관습에 부응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인도의 증거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EXW조건을 제외한 모든 거래조건에 대한 매도인의 의무 제8항에는

“Where the seller and the buyer have agreed to communicate electronically, the document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may be replaced by an equivalent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message”라는 文言이 추가되어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 서류는 EDI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W조건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소 예컨대 작업장이나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수가능하게 했을 때 인도의무를 완료하기 때문에 물품인도의 증거나 운송서류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EXW조건을 제외한 모든 거래조건에서의 매도인의 의무 제8항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FCA 조건에서 文言이 “Where”가 아니라 “When”으로 되어 있는 것과 “Paragraphs”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FAS, CFR, CIF뿐이고, 나머지 아홉가지 조건에서는 “Paragraph”로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이러한 규정상의 불일치는 아마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인 의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어떻게 EDI를 실행하는가에 대해서는 Incoterms에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전자식 통신문(electronic message)이나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s)의 발행으로 선화증권의 대체가 예상될 때나,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 부터 물품을 획득하거나 운송중인 물품을 전매하기 위하여 선화증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0년 국제해사위원회(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CMI)가 채택한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과 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가 그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구한다.

(2) 信用狀統一規則과 EDI

국제상업회의소의 은행, 기술, 실무위원회는 최근 국제운송시장에 컨테이너와 복합운송방식이 정착되고 무역거래 분야에서도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달과 도입으로 인하여 이른 바 EDI방식에 의한 무역의 시대에 접어들어 들게 됨에 따라 1983년 개정, 공포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400)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발달과정에 있는 주요관습, 특히 전자식 신용장 분야의 관습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각국의 ICC국내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안을 마련하고 ICC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UCP 500」으로公表하였다.

UCP 500은 세계 100여개국의 2,000여 외국환은행에서 이미 신용장에 관한 모든 통신업무를 SWIFT (세계은행간 금융전신망)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改正規則을 EDI방식의 신용장과 그 관계서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충분히 보완하였다는 점에 서¹¹⁾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EDI관련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DI시스템을 信用狀과 그 관계서류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信用狀統一規則의 관련조항을 완화하였다. 신용장통일규칙은 모든 화환신용장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장의 본문에는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헌, 즉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과 같은 적요가 삽입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흔히 각국의 법원이나 중재원에서는 신용장에 관한 분쟁에 임할 때 실제로 신용장상에 그러한 준거문헌이 있든 없든 간에 우선 신용장통일규칙을 준용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많다. 나아가서 ICC은행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적서류를 전제한 화환신용장에 적용하는 신용장통일규칙을 서류의 우송없이 거래하는 EDI방식의 신용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따라서 EDI 또는 SWIFT 방식의 신용장에 있어서 전신약어에 의하여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헌을 삽입함으로써 당연히 본 통일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¹²⁾

둘째, UCP 400 제22조 C항에서는 자동시스템이나 컴퓨터시스템 또는 카본 복사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도 수리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전자서명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UCP 500에서는 EDI방식에 의한 서류에 대비하여 원본서류란 ‘원본’이라는 표시와 함께 필요한 경우 육필서명, 팩스, 친공, 스탬프, 도장과 같은 상징, 기계 또는 전자방식 등의 인증에 의한 서명이 있으면 은행에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UCP 500 제20조 b항은 전자방식에 의한 무역통신의 발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명에 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가능한 여러형태의 무역거래 그리고 법률적 또는 공적인 서명을 포괄할 수 있게 광범위한 규정을 둔 것이다.

셋째, UCP 500 제37조 a항에는 상업송장에는 서명이 필요없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EDI방식으로 송장을 발급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므로 서명 대신 다른 방법으로 진본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도입될 것을 예상한 조항으로 보여진다.

11) 양영환, 1993년 개정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대한상공회의소, 1993, p.13.

12) 앞의 책, pp.21 - 22.

(3) 평가

국제거래의 당사자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Incoterms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계약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계약에 그러한 취지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Incoterms가 당연히 관습으로서 묵시적으로 적용되는가는 의문이다.¹³⁾ 왜냐하면 종래 Incoterms는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국제적인 상관습으로 인정되고 있으며¹⁴⁾ 이는 Incoterms가 광범위하게 이행되고 있는 기존의 관습을 집대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Incoterms 1990는 상당히 시대에 앞선 참신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의 관습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는 무역관계자에 의해 항상 준수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Incoterms를 계약에서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리라고 생각된다는 견해도¹⁵⁾ 엄존하고 있는 바 주의를 요한다. 또한 대금지급이 신용장 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Incoterms와 같이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이 신용장상에 준거문언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EDI를 도입하기 위한 신용장통일규칙상의 개정된 규정의 내용에 정통해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UCP 500은 보다 진일보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電子式 船貨證券(Electronic Bills of Lading)에 관한 CMI規則과 EDI

(1) 전자식 선화증권의 개념

무역자동화로 EDI가 효율적으로 실현되려면 전자문서가 종래 종이문서가 갖는 법률적 기능과 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종이서류 가운데 특히 선화증권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서 선화증권의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상징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잠재적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식 선화증권이란 기존의 서면선화증권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선화증권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서면선화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선화증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적방법에 의해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운송인이 부여한 개인 키(Private Key: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운송인과 송화인(매도인) 또는 수화인(매수인 또는 지시인) 상호간에 EDI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 키(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을 그 권리자의 지시에

13) 新堀 聰, 國際統一賣買法, 向文館, 1992, p.18

14) C.M.Schmitthoff,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9th ed.), Stevens & Sons, 1990, p 241.

15) 新堀 聰, 앞의 책, p 18

따라 수화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의 선화증권을 말한다.¹⁶⁾

이러한 전자식 선화증권은 무역서류의 EDI화에 따른 문제와 선화증권 고유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선화증권 고유의 권리증권적인 성격을 전자적 환경에서 구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식 선화증권은 EDI 실무계에서는 “EDI의 에베르스트산(the Mount Everest of EDI)”으로¹⁷⁾ 일부 무역법률 전문가들은 미해결 EDI 법적 문제의 「最後의 聖杯(Holy Grail)」로¹⁸⁾ 부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물품유통의 원활화 및 신속화 뿐만 아니라 서류의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해 해상화물운송장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선화증권의 가능중 권리증권의 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EDI메시지에 의한 전자식선화증권인데 이 경우 정보의 전달이나 권리의 증명도 전송해야 하지만 암호화에 의한 증명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항해중의 화물에 대한 전매도 할 수 있게 된다. 선박회사는 목적지에서 화물을 수령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다면 서류의 제시가 필요없게 된다.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성이란 선박회사가 선화증권을 소지한 자에게만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그 외 어느누구라도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래서 선화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징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운송서류를 EDI통신문으로 대체할 때 문제는 없는가? 선화증권이 물품인도의 증거일 뿐만아니라 물품을 화제하는 법적상징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대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선화증권의 유통성이란 운송인이 선화증권의 원본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있다. 어떻게 선화증권이 전자식 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가능하다.

첫째, 전자방식으로 통신하기로 합의해야만 하고 둘째, 그 합의는 선화증권의 대체와 관련하여 특정한 형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운송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지시를 부여하는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물품을 인도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이 권리는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증권의 점유자에게 부여되어 왔지만 EDI를 사용하는 경우 운송인이 전자적

16) JASTPRO, 貿易手續의EDI化に係る法的問題, 1991,p.17.

17) Ake Nilson, 「The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BIMCO Bulletin,1991. January/February, p 17

18) Michael S.Baum and Henry H.Perritt,Jr ., Electronic Contracting, Publishing, And EDI Law, John Wiley & Sons, Inc , 1991, p.689.

지시를 하도록 수권한 자에게 부여된다.¹⁹⁾

(2)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

구체적으로 당사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EDI메시지를 선화증권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CMI는 1990년 6월 파리총회에서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을 채택하였다. 이 규칙은 정보전송의 신속화를 행하기 위하여 증래와 같은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선화증권에 관한 정보를 전자데이터 통신에 의해 전송하는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모두 11個條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적용범위

제2조:정의규정으로 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EDI,UN/EDIFACT, 전송(Transmission),확인(Confirmation),개인 키(Private Key),소지인(Holder),전자식 감시시스템(Electronic Monitoring System),전자식저장(Electronic Storage) 등 전자식 선화증권으로 운송계약이 이행될 경우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규정이다.

제3조:절차규칙으로 이 규칙에 근거한 거래가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및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UNCID 및 UN/EDIFACT의 적용을 받는다.

즉 a항에는 「무역데이터 전송교환 통일규칙(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UNCID)」이 당사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b항에는 「EDI는 관련된 UN/EDIFACT 기준에 합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c항은 「운송계약의 서류형식은 선화증권에 관한 유엔서식설계기준(UN Layout Key) 또는 그것과 일치하는 국제기준에 합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조:수취메시지의 형식 및 내용

제5조:운송계약의 조건

제6조:적용되는 법

제7조:물품의 지배, 처분권

제8조:개인 키

제9조:인도

제10조:서명형식의 서류를 수취할 선택권

제11조:전자데이터는 서면과 동일

19) Jan Ramberg, op.cit., p.31.

(3) 電子式 船貨證券의 發行 및 權利移轉節次

CMI규칙을 중심으로 전자식선화증권의 발행 및 권리의 이전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당사자가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통일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송화인과 운송인간에 운송계약이 성립하면 계약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다.

②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하면 운송인은 송화인에 대하여 물품을 수취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유엔표준메시지(United Nations Standard Message:UNSM) 방식에 따라 송화인이 특정한 전자적 주소(electronic address)에 전송한다. 이 수령 메시지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²⁰⁾

(i) 송화인의 명칭

(ii) 서면형식의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화물의 명세, 표시 및 유보문언

(iii) 물품의 수령일 및 수령장소

(iv) 운송인의 운송조건에 대한 참조사항

(v) 이후의 전송에서 사용되는 개인 키(Private Key)

③ 송화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이러한 화물수령통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확인을 하였을 때 송화인은 개인 키의 소지인(holder)이 된다.²¹⁾ 소지인이란 유효한 개인 키를 가지기 때문에 물품의 지배, 처분권을 가지는 당사자를 의미한다.²²⁾

④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지는 유일한 당사자이다.²³⁾

(i)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

(ii) 수화인을 지명하고, 또는 지명된 수화인을 자기를 포함하는 다른 당사자를 지정된 수화인으로 변경하는 것.

(iii) 지배, 처분권(the right of control and transfer)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

(iv) 소지인이 서명형식의 선화증권의 소지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라 운송인에게 화물에 관한 기타 모든 사항을 지시하는 것.

⑤ 소지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물품에 대한 지배, 처분권을 이전한다.²⁴⁾

(i) 현재의 소지인이 지배, 처분권을 새로운 소지인에게 이전하려는 취지의 메시지를 운

20)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1990, 제4조 a, b항.

21) 상규칙 제4조 b항.

22) 상규칙 제2조 g항.

23) 상규칙 제7조 a항.

24) 상규칙 제7조 b항.

송인에게 통지한다.

(ii) 운송인은 현재의 소지인의 통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개인 키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물품수취통지에 포함된 정보를 새로운 소지인에게 전송한다.

(iii) 새 소지인은 지배, 처분권을 수락하는 취지를 운송인에게 통지한다.

(iv) 운송인은 현재의 개인 키를 폐기하고 새로운 개인 키를 새로운 소지인에게 발행한다.

이와같은 수준을 반복함으로써 당사자는 서면형식의 선화증권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품에 대한 지배, 처분권의 권리를 이전 및 양도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물품의 지배, 처분권은 서명형식의 선화증권에 기초한 권리의 이전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²⁵⁾

⑥ 개인 키는 숫자 및/또는 문자를 조합시킨²⁶⁾ 비밀번호이지만, 각 소지인에게 고유한 것이고, 소지인은 개인 키를 양도할 수 없다.²⁷⁾

⑦ 도착지 항구에서 운송인은 개인 키에 의해서 확인되는 화물인도지시서에 의거하여 물품을 인도한다.²⁸⁾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의 권리 이전절차는 끝나게 된다.

(4) 선화증권의 위기와 해상화물운송장

상기 1 - 3항에서 언급한 전자식 선화증권의 적극적 활용은 데이터 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컨테이너선 등의 고속화에 의해 선박은 목적지에 상당히 빨리 도착하고 있으나 선적서류는 종전과 같이 은행경유로 처리되고 있어 자주 본선이 입항하고도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아니함으로써 물품의 인수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L/G보증인도에 필요없는 수고와 비용이 들고 있다. 또한 장소에 따라서는 체화해소를 위해 먼저 물품을 인수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 사기나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화증권의 위기라 부르고 있다.²⁹⁾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선화증권에 대신할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s)이 등장하였다.³⁰⁾

1990년 6월에는 국제해사위원회(CMI)에 의해 해상화물운송장의 이용증대에 부응하여 이를 규율할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규칙(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이 채택되었다.³¹⁾

25) 상기규칙 제7조 d항

26) 상기규칙 제2조 f항.

27) 상기규칙 제8조 a항.

28) 상기규칙 제9조.

29) JASTPRO, 앞의 책, p.27

30) P&O Containers Ltd., The Merchants Guide(4th ed.), 1987, p.32.

선화증권이 화물의 수령증, 해상운송계약의 증거 및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권리증권인데 비하여 해상화물운송장은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되며 권리증권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증명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정보전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해상화물운송장의 내용을 EDI에 의해 대체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해상화물운송장에 있어서는 권리와 서류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유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자체가 Paperless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³²⁾

(5) 평가

첫째, 선화증권의 EDI화에 따른 어려운 문제점은 선화증권이 갖는 상징적 기능인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혹은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으로서의 성격, 즉 은행거래에서의 담보기능(security)과 서류의 이전에 의한 물품의 전매기능(resale)을 데이터의 전자적 이전(electronic transfer)에 의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전매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국제물품거래에서는 시세의 변동 등의 요인에 의해서 해상운송중의 물품을 전매할 경우가 있다. 예컨대 원유 등과 같이 물품이 현물시장(spot market)에서 판매된 경우에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송화인과 실제의 수화인 사이에 다수의 무역업자들이 개입되고 선화증권이 여러번 전매유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 CMI규칙하에서는 운송인이 발행한 개인 키의 적법한 소지인이 전통적인 선화증권 소지인과 동일하게 지배, 처분권을 보유하며 개인 키가 기존의 선화증권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서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운송인으로부터 개인 키를 부여받은 소지인의 지시에 의해 권리를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키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개인 키가 전통적인 선화증권과 동등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³³⁾ 개인 키의 이전과정에서 개인 키의 양수인이 운송인임을 위장한 누군가가 전송한 비실존권리(non-existing rights)를 승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운송인은 양수인이 실제 수령 메시지(an honest receipt message)를 수령한 것으로 받고 개인 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과 운송인은 각각 다른 수령메시지를 승낙하고 확인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개인 키에 편입되어 있는 권리는 개인 키의 적법한 취득 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전송한 유효한 수령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좌우된다. 이러한 문제는 수령 메시지와 개인 키를 조합한 전자식 선화증권이 전통적인 유통가능 선화증권과 동등하다는 CMI규칙상의 약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31) Jan Ramberg, *op cit.*, p.81.

32) Kurt Gronfers, *Cargo Key Receipt and Transport Document Replacement*, Gottenburg Maritime Law Association, 1982, pp.12-29

33) 한남성, 「전자식 선화증권의 이용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소고」, 둔남 양영환 박사 화갑기념 무역상무의 제문제, 삼영사, 1994, p.351.

것이다. 원칙적으로 유통가능 권리증권의 창출은 제정법만이 보유하는 특권이다.³⁴⁾

담보기능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화환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거래의 당사자인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이러한 전자식 선화증권을 수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영미법상의 권리증권 관련조항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및 선화증권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전자식 선화증권이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전자식 선화증권의 존재 및 전송문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는데 이용되는 개인 키의 보안이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책임감 있는 은행은 아무도 사기가가능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³⁵⁾

개인 키 자체의 보안문제는 전자적인 진정성 확인수단을 통하여 현행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물품의 지배, 처분권의 이전과정에서 운송인은 개인 키의 이전을 지시하는 현재의 개인 키 소지인의 지시권이 그 전의 개인 키 소지인으로 판명된 자료부터 부여된 것인가를 추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사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³⁶⁾

셋째, CMI규칙하에서는 선화증권매매의 등록기관역할을 운송인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이 전자적 거래자료의 등록기관이 됨으로써 자료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다음 3절에서 논급한 UNCID 제10조 제1항에는 「각 거래당사자는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고 발송 및 수령된 대로 완전한 거래자료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적 거래자료의 수정이 금지되어 있으나 그 개연성은 높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자식 선화증권의 주요 관련 당사자인 은행이 다수의 운송인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전자식 선화증권을 신뢰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³⁷⁾ 전자식선화증권에 대한 신뢰성의 필요를 고려할 때, 거래상 중립적이고, 자료접근이 용이한 공적형태의 등록기관을 설정하거나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띤 신뢰할 수 있는 중앙등록기관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등록기관으로서의 운송인들의 그룹 또는 그 대표기관, 은행그룹, 국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 기업이 고려될 수 있으며 만약 한 국가수준의 기관이 아니라 지역적이거나 범세계적인 기관일 경우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34) Boris Kozolchyk 「Evolution and Present State of the Ocean Bill of Lading from a Banking Law Perspective」,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23, No.2, 1992. April, pp.239-240.

35) *ibid.*, pp.237-239.

36) 한남성, 앞의논문, p.353.

37) Boris Kozolchyk, *op.cit.*, p.238.

3. UNCID와 EDI

(1) UNCID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EDI이용의 일반화 추세에 따라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EDI의 이용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예컨대 국내법, 국제상관습, 행정규제 분야에서의 장애물 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몇몇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하여 왔다. 개별기업들이 ED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서류가 EDI로 대체되는 경우의 계약상의 문제나 상업적인 문제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legal insecurity)과 법적 공백(vacuum)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초의 작업이 UN/ECE의 후원하에 북유럽법률위원회(Nordic Legal Committee)의 주도로 만들어진 통신약정에 관한 통일규칙을 위한 제안(Proposal for Uniform Rules for Communication Agreements:UNCA)인 것이다.

그 후에 국제상업회의소는 CCC, UNCITRAL사무국, ECE, ISO, UNCTAD위원, CEC, EDI사용자그룹의 대표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5가지 원칙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무역 데이터의 전송교환 통일규칙(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UNCID)」인 것이다.³⁸⁾

EDI를 이용하려면 그 전제로 당사자들이 무역 데이터 항목코드, 전달규칙 고도의 기술적 확실성의 보장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는데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른바 법적 요구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몇가지 형태의 일반적인 규칙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UNCID를 제정한 이유이다.³⁹⁾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규칙은 관련 당사자간의 합의된 실행규칙을 제정하여, ETDI(Electronic Trade Data Interchange)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둘째, 통일규칙은 데이터의 교환에만 적용하고, 전송되는 무역 데이터 메시지의 내용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셋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ISO 및 기타 국제표준을 근거로 제정한다.

넷째, 안전성, 검증, 확인, 당사자의 입증, 자료의 기록과 저장 문제를 다룬다.

다섯째, 해석상의 기준을 제공하여 국제적 이해를 강화하고 코드의 사용을 촉진한다는 원칙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원칙에 의거 모두 11개조로 구성된 UNCID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8) Nigel Savage and Ian Wald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The UNCID」 EDI and The Law, 1989, p.69.

39) 김태윤, 전자거래정보교환, 집문당, 1991, p.269.

제1조:입법목적(objective)

제2조:무역 거래(trade transaction), 무역 데이터 메시지(trade data message), 무역 데이터 이전(trade data transfer), 무역 데이터 교환의정서(trade data interchange application protocol:TDI-AP), 무역 데이터통(trade data log)에 관한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제3조:적용(application)

제4조:교환 정보 표준(interchange standards)

제5조:책임(care)

제6조:메시지 및 데이터 이전(messages and transfers)

제7조:이전데이터의 수신 확인(acknowledgement of transfer)

제8조:내용확인(confirmation of content)

제9조:무역 데이터의 보호(protection of trade data)

제10조:데이터의 저장(storage of data)

제11조:해석(interpret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원칙은 제1조 및 제2조에 구현되어 있는 바, 제1조에는 본 규칙은 무역 데이터의 전달(transmission)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실행규칙(rules of conduct)을 제정함으로써, 전송(teletransmission)에 의한 무역 데이터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교환되는 무역 데이터의 내용에는 본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조 d항은 통신약정이 EDIFACT와 같은 표준 메시지 구조의 사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한 것이다.

둘째 원칙은 제1조 및 제8조 내용의 확인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의 내용 예컨대, 이전된 무역 데이터의 내용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규칙은 전적으로 통신수단에 관한 것으로 데이터의 내용에 관한 것과 구별하는 것은 특정한 통신협약의 범위를 단 순화하고 한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3조와 제4조는 각각 적용범위와 교환 정보 표준에 관한 것으로 제2조와 함께 셋째 원칙을 성취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5조 및 제9조는 각각 책임과 무역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넷째 원칙인 안전성의 문제를 다룬 규정이다. 이 규정은 EDI의 사용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법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UNCID규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 규정이다. 특히 제5조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책임과 의무를 할당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 기본 원칙을 개관한 것이다.

제6조, 메시지와 이전 데이터, 제7조, 이전 데이터의 수신 확인, 제8조는 넷째 원칙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6조는 당사자들이 채택된 교환 정보표준내의 메시지 취급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메시지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하며 확인수단이 있는 발신인이 정확한 수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메시지의 발신인이 이전 정보의 수신 확인서를 요청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10조, 데이터의 저장은 당사자들이 그들이 발신하거나 수신한 모든 이전 자료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입증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한 조항이다. 이는 분쟁 발생시에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록으로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조항은 당사자들이 이들 기록을 국내법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최소한 3년 또는 그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11조는 규정의 정확한 의미에 관한 해석상의 모든 질의를 ICC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규칙이 통일된 방법으로 해석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⁴⁰⁾

(2) 평가

이 규칙은 구속력이 있는 법적 수단은 아니지만 국내 및 국제법제와 관습이 EDI의 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될 때까지 「다리를 놓는 역할」을 의도한 것이다. 즉 UNCID 자체가 목적이 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⁴¹⁾ 그러므로 UNCID가 EDI 무역당사자들에게 행동기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면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것이 불이행의 증거라고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⁴²⁾

UNCID가 국제기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UN/EDIFACT메시지 표준을 위한 법적기준으로 UNCID가 채택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UNCID는 특정한 통신 또는 교환약정이 초안될 수 있는 기준을 형성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결국 EDI의 이용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약정을 필요로 하며 UNCID는 당사자 사이의 교환약정(Interchange Agreement:IA)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4. 우리나라의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40) Nigel Savage and Ian Walden, op cit , pp 69-71.

41) 김태운, 앞의 책, p.268.

42) Nigel Savage and Ian Walden, op.cit , p.71.

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처리 방법은 무역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시간, 비용 및 인력이 소요되는 등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무역업무 자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2월 31일에 법률 제4479호로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업무자동화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무역 업무에 대한 자동화 사업을 상공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³⁾

둘째,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현행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처리방법 대신 상공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에 의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무역업무자동화 방식으로 무역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⁴⁴⁾

셋째,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행하는 것은 무역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문서에 의하여 무역업무를 행한 것과 같은 능력을 인정하였다.⁴⁵⁾

넷째, 전자문서의 위조 및 변조와 그 내용의 누설 등을 방지하여 전자문서 유통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였다.⁴⁶⁾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7個章, 全文29條, 附則으로 구성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본보다 앞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것으로 선언적인 의미가 매우 강한 법률이라 판단된다.

IV. 電子文書의 諸法律問題

EDI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종래의 종이서류가 전자문서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으며 EDI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문서가 전통적인 종이서류가 갖는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종이서류는 ① 정보 기능(informative function), ② 증거 기능(evidential function), ③ 상징 기능(symbolic function) 등 3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⁴⁷⁾ 예컨대 대표적인

43)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44)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45)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46)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서류인 선화증권은 선적된 화물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운송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운송화물을 대표하는 권리증권으로서 선화증권의 양도는 소유권 이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각종의 법률이나 제도가 서면에 의한 서류를 예상하고 실제로 그러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위의 ②와③의 기능과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법이나 제도가 EDI의 발전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EDI의 국제적 표준화 과정에서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 들을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제법률 문제를 각종 국제규칙, 협약 등을 중심으로 논구한다.

전통적인 무역서류가 전자식 통신문으로 대체되는 경우, 전자식 통신문 자체에서 예견되는 법률적인 문제⁴⁸⁾로서는 ① 전자식 통신문의 진본확인(authentication)의 문제, ② 자료내용의 입증(evidence or proof of contents)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컴퓨터에 의한 자료와 관련된 문제로서는 ① 안전성(security)의 문제 ② 자료의 입력, 전송 및 출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오진 등에 따른 책임(liability)의 문제 등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 전자에 한정하여 논구하고자 한다.

1. 眞本確認問題

서류의 진본인지의 여부는 보통 서명의 확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서류에 대한 서명의 기능은 서류의 출처와 서명인, 서류의 정보내용을 확인하고 정보내용에 대한 서명인의 동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서명인이 그 서류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진본확인(眞本確認)의 효과에 있다.⁴⁹⁾

그런데 전통적 종이서류가 전자서류로 대체될 경우 전자식 서명이 전통적 서명과 동등한 진정성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통적인 서명의 개념은 자필서명을 말하지만 처리해야할 서류가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자필서명 양식의 고무인 등을 이용한 서명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필서명만이 서명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도 이러한 접근이 법원이 서명의 요건을 고려하는데 반영되고 있다.

47) Ian Walden and Nigel Savage, 「The Legal Problems of Paperless Transaction」, J.B.L., 1989.3, p 105.

48) 양영환, 최영국, 무역매매론, 박영사, 1994, p.359.

49) 宋啓儀, EDI거래의 법률적인 문제,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1993, pp.17-18.

즉 팩시밀리에 의한 서명도 유효하며 석판인쇄에 의한 서명도 유효하다. 이와같이 서류의 진본확인이란 측면에서 볼 때 서명을 반드시 자필서명의 의미로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EDI통신에서도 서명의 본질적인 요소가 확인될 수만 있다면 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⁵⁰⁾ 이 요건은 ① 어떤 서명, 부호, 표지 ② 서명으로서의 유일성 ③ 서류에 서명의 첨가 ④ 서류의 내용에 동의하고 진본확인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결국 서명의 실질적인 본질은 서류가 진본임을 확인하여 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EDI 통신문의 서명이 유일성과 진본임을 확인하여 주는 중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이 서명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⁵¹⁾ 이는 Goodman v. Eban 사건에서 상소원이 변호사의 어음에 대하여 팩시밀리 서명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예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⁵²⁾

이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및 벨기에)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는 서명된 기록문서로 증빙되어야 된다고 규정⁵³⁾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 법률이 규율하는 상거래에서는 전자식 통신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하여 EDI 사용에 장벽이 놓이게 하지만 일반원칙으로부터 많은 예외들이 존재한다.

① 5천 프랑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나 증빙될 수 있으며⁵⁴⁾ ② 1341조는 민법전이 규율하는 모든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상거래(commercial transaction)는 민법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③ 서면증거의 획득이 불가능한 사항(material impossibility)인 경우에는 서명된 문서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식 통신문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⁵⁵⁾

둘째, 미국의 통일상법전에는 전자통신문을 상거래에서 서면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가시적인 형태의 의도적인 변형으로서의 서면으로 정의하고 있다.⁵⁶⁾

셋째, 영국의 해석법(Interpretation Act, 1978)에서는 서면을 타이핑, 인쇄, 석판인쇄 및 가시적인 형태의 언어표현의 다른 방법으로 정의함으로써 영미법에서도 전자식 서명을 서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 등 또는 승인 등을 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은 무역관련법령 등이 정한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⁵⁷⁾고 하여 전자서류의 진정성 문제를 전자식 서명으로 확보할

50) Rob Bradgate, 'Evidential issues of EDI', EDI and The Law, London, 1989, p.3

51) 宋啓儀, 앞의 논문, p.18.

52) Rob Bradgate, op.cit., p.33.

53) 프랑스 민법 제1341조.

54) 1954년 법률개정(계약집행)법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1893년 영국 물품매매법 제4조에는 10파운드 이상의 매매계약이라는 제하의 유사한 조건이 사용되었다.

55) Rob Bradgate, op.cit., p.31.

56) U.C.C. 제1-201(46)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본확인의 방법으로 “무역업자가 업체용 종이서류 원본이 필요하여 원본확인을 신청할 경우 승인기관은 무역업자의 시스템에서 출력한 종이서류에 원본임을 확인(업체용 표시, 서명권자 날인)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⁷⁾

그러면 전자식 서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전자식 서명이 전통적 서명과 동등한 법률적 효과를 갖는 여러가지 전자식 서명방법이 은행법 분야에서와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at Point-of-Sale: EFTPOS) 방법의 사용시에 검토되어 왔다. 전자식 서명방법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⁵⁸⁾

첫째,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제도로 은행현금인출기의 사용방법과 유사한 PIN이라는 개인카드를 넣고 정보를 송부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PIN에 타이핑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보의 수령자는 카드상의 정보로 PIN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정보가 카드의 소지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은행의 현금인출기 사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PIN 제도의 안전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PIN 자체의 안전성에 달려있다 하겠다.

둘째, 암호(encryption)제도로 많은 해설가들이 전자식 서명으로 암호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값이 자신의 유일한 암호를 사용하여 을에게 정보를 발송하면 암호는 값이 서류의 발송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셋째, 생물측정학(biometrics)방법으로 기술진보에 따라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고안된 생물측정학적 방법이 서명으로서의 응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지문, 음성인식 등 생물학적 특징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적어도 서류상의 전통적인 서명과 같이 효과적이며 안전한 EDI 통신문을 인정하는 전자방식이 고안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법률이 그러한 전자식 서명을 채용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즉 각국의 법률이 전통적인 서류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무역에서 전자식통신문의 법적 효력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들이 어떠한 방식의 진본 인증수단을 이용할 것인가를 사전에 약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당사자들이 통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 약정에서 상업적인 적절한 진본확인 방법을 합의하고 당사자들이 이 방법을 준수할 경우, 전자식통신문은 진정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통신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진본여부는 당시 상황에서의 진본 확인 방법이 상업적으로 적절한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⁶⁰⁾ 상

57)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 제1항.

58)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59) Rob Bradgate, op cit., pp.34-36

업적 적절성 여부의 판단에는 ①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대적인 경제규모 ② 거래활동의 성격 ③ 당사자들 간의 상업적 거래빈도 ④ 거래의 종류와 규모 ⑤ 관련입법 및 규정하에서의 서명의 지위와 기능 ⑥ 통신시스템의 수순 ⑦ 통신시스템 운영자들이 설정한 진본인증절차 ⑧ 기타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⁶¹⁾

2. 證據能力問題

전통적인 종이서류에 기록된 자료는 서명 또는 구두에 의한 확인에 의해 진본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자료내용의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통신 수단인 EDI의 이용은 상거래에서 자료내용의 입증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면형식의 선화증권이 위조되거나 변경될 경우 전문가의 검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반면에, 전자식 선화증권의 데이터는 컴퓨터에 의해서만 작성이나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흔적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쉽게 정보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EDI와 관련된 증거의 문제는 다음의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⁶²⁾

①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 또는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메시지가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의 수용문제(admissibility)

② 컴퓨터로 이루어진 통신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가의 인증문제(authentication question)

③ EDI 메시지가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서면(writing) 또는 서명(signature)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형식적 요건 문제(formal question) 이다.

이들 문제는 상호 연관된 문제들이다. 인증문제는 수용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형식적 문제는 수용문제 및 인증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먼저 증거로서의 수용여부와 관련하여 UNCITRAL은 『컴퓨터기록의 법적가치』라는 보고서에서 『국제무역이나 세관통관을 위하여 서류의 전송을 포함하여 자동화된 방식의 사용을 방해할 정도로 소송상의 증거로서 컴퓨터 기록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없다』⁶³⁾고 지적하고 있다.

60) 한남성, 앞의 논문, p.361.

61) UNCITRAL, A/CN. 9/373 (1993. March), Para 67.

62) Rob Gradgate, op.cit., pp.10-11.

63) UNCITRAL, Legal Value of Computer Record, Report of Secretary General, A/CN. 9/265, 1985, p.21

EDI 생성자료의 증거로서의 허용성의 문제는 보통법과 대륙법 전통이 현저히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EDI기록을 증거로 허용하는데 장애요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증거로 인정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 그러나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법원 소송 및 중재에서 컴퓨터 기록을 증거로 허용하는데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애요인의 좋은 예가 보통법계 국가 특히 영국에서 존재하는 전문증거의 원칙(hearsay rule), 최상증빙원칙(the best evidence rule), 제시에 관한 원칙(the rules as to discovery)이다.⁶⁴⁾

첫째, 전문증거의 원칙은 2차적인 증거원으로 컴퓨터 기록 및 기타 전자적 형태의 증거는 전문증거로 간주되어 배제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전문증거원칙의 예외인 상거래 기록(business records)이라는 방식으로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컴퓨터 상에 나타난 서류가 기계가 직접 생산한 증거기록인 경우에는 항상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⁶⁵⁾ 형사 및 민사법정의 많은 경우에 컴퓨터가 생산한 직접증거는 전문증거원칙(hearsay rule)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⁶⁶⁾

이러한 영국의 모델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컴퓨터에 의해 생성되거나 저장 가공된 자료를 법정에서 증빙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전문증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구체적인 입법적 예외를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컴퓨터 기록문을 다룰 특별입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록문을 전문증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여 왔다.⁶⁷⁾

대륙법계에서는 민법이 訊問制度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전문증거의 원칙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특정의 증빙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는 법정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모든 관련증빙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는 인정되는 증빙의 목록을 규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컴퓨터 기록문도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⁶⁸⁾

둘째, 최상증빙의 원칙은 일명 원본서류의 원칙(original document rule)으로서 이 원칙은 계획적이고 부주의한 변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빙으로 복사서류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가 서류의 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기 원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사본으로 인한 실수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복사방법의 발달로 점차

64) Rob Bradgate, op.cit., pp.12-13.

65) Brian Napier(ed.), 「Computer records as evidence-back to the beginning?」, J.B.L.,1993. September, p.505.

66) 이에 관한 판례로는 R.v.Wood (1983) 76 Cr.App.R.23; Castle v.Cross (1985)1 ALL E.R.87;The Statue of Liberty (1986)2 ALL E.R 195;R.v Minors (1989)2 ALL E.R.208;R.v.Spiby (1990) 91 Cr. App.R.186.

67) King v.Murdock Acceptance Corp.(1969) 222 So.2d.393.

68) 한성일, 「국제무역거래에서 전자식 통신문의 사용에 따른 매매계약상의 문제점」, 둔남 양영환 박사 화갑기념 무역상무의 제문제, 삼영사, 1994, p.163.

폐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진복사는 증거로서 제공될 수 있고 복사본의 진정성에 대한 증거가 제공되는 조건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되고 있다.⁶⁹⁾

셋째, 제시에 관한 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에 관련된 현재와 과거의 모든 관계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 앞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이러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컴퓨터 기록문의 원본대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매체(media)에 대한 검사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이 원칙은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시스템을 진문가와 함께 검사할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며 소송당사자가 컴퓨터출력(printout)에 만족하기 보다는 원래의 매체를 검사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의가 있다.⁷⁰⁾

위와같이 전자적 기록증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보통법계 국가에서 전자문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식 선화증권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그것이 상거래기록이며 CMI규칙 제3조 e항에 의거 전자식감시시스템(electronic monitoring system)이 도입되고 UNCID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자료가 법적증거로 허용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영국에서 종전의 선화증권법(1855)을 대체하여 1992년에 제정된 해상물품운송법(Carriage of Goods by Sea Act)은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화물인도지시서와 관련한 전자식서류에 대한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입법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미법계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문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⁷¹⁾ 있어 법적증거허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관련 조항에 대한 상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V. 結 論

컴퓨터의 보급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EDI에 의한 전자문서의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정보화시대에 국제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오늘의 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무역업무자동화가 실현될 경우의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와 EDI관련 국내외 입법의 내용

69) Rob Bradgate, op.cit., p.24.

70) ibid., p.26

71)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을 논구한 후 예상되는 전자문서 자체의 문제점을 진본확인문제와 증거능력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구하였다.

EDI방식에 의한 정보의 교환이 동업자, 국내무역관련기관, 국제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착되었거나 앞으로 정착될 상관습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을 감안할 때 상관습의 형성과 함께 관련 국내외 입법의 내용에 대하여 EDI이용 당사자들은 정통해야 한다.

첫째, EDI방식을 근간으로 한 무역거래는 전통적인 무역거래 방법과 같이 법률, 언어, 관습 등을 달리하는 異國의 상인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때문에 EDI방식에 의한 거래의 당사자들은 이 방식을 채용할 때 교환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조항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반 계약법이나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⁷²⁾에서도 구현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더욱 그러하다.

둘째, Incoterms나 신용장 통일규칙 등 국제상관습의 동향을 주시하고 그 내용에 정통해야 한다. 단 유의해야 할 것은 이들 정형화된 관습들이 무역관계자에 의해 항상 준수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준거문언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셋째, 전통적인 무역관계서류를 EDI화 할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권리증권인 선화증권인 바 특히 선화증권의 담보기능과 전매기능을 데이터의 전자적 이전에 의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하여 CMI규칙하에서는 개인 키의 소지인이 기존의 선화증권 소지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으나 유통가능 권리증권의 창출은 제정법 만이 보유하는 특권이라는 등의 다양한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전자식 선화증권과 관련된 또하나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 키의 보안이 불충분하다는 점과 선화증권매매의 등록기관역할을 운송인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전자문서의 진본확인과 증거능력상의 문제는 이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법이 없는 까닭에 각국에서 개별입법의 방식으로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며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를 완화하면서 세계적인 통일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 분야는 아직 많은 판례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입법도 여러면에서 불비한 점이 많아 연구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으며 앞으로 제도의 정착과 함께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특히 법률적인 제문제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앞으로 계속이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72) UNCCISG 제4조, 제6조 참조.

參 考 文 獻

1. 김안식, 무역거래진산화론, 법문사, 1985.
2. 김태윤, 전자거래정보교환, 집문당, 1991.
3. 무역상무연구회, 무역상무연구 제7권, 1994.
4. " , 둔남양영환박사 화갑기념 무역상무의 제문제, 삼영사, 1994.
5. 송계의, 「EDI거래의 법률적인 문제」,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1993.6/8.
6. 양영환, 1993년 개정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대한상공회의소, 1993.
7. 정상직, 무역사무자동화론, 형설출판사, 1993.
8. " , 「무역자동화에 관한 소고」, 둔남 양영환 박사 화갑기념 무역상무의 제문제, 삼영사, 1994.
9. 전순환, 「EDI에 의한 운송서류 대체에 관한 연구」, 둔남 양영환 박사 화갑기념 무역상무의 제문제, 삼영사, 1994.
10. 한남성, 「전자식 선화증권의 이용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소고」, 둔남 양영환 박사 화갑기념 무역상무의 제문제, 삼영사, 1994.
11. 한성일, 「국제무역거래에서 전자식 통신문의 사용에 따른 매매계약상의 문제점」, 둔남 양영환 박사 화갑기념 무역상무의 제문제, 삼영사, 1994.
12. 한성일, 「전자식 선화증권으로의 전환에 관한 소고」, 한국해운학회지 제15호, 1992.
13. 新堀 聰, 國際統一賣買法, 同文館, 1992.
14. 朝岡良平, 貿易賣買と商慣習, 東京布井出版, 1981.
15. JASTPRO, 貿易手續の EDI化に 係る法的問題, 1991.
16. Ake Nilson, 「The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BIMCO Bulletin, 1991. January/February.
17. Barbo Beer, 「Informatics in International Trade-Harmonization of Standards for Telecommunicated Messages」, The Journal of World Trade Law, 1985.Nov/Dec.
18. Boris Kozolchyk, 「Evolution and Present State of the Ocean Bill of Lading from a Banking Law Perspective」,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1992.
19. Brian Napier(ed.), 「Computer records as evidence-back to the beginning?」, J.B.L., 1993. September.
20. C.M.Schmitthoff,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9th ed.), Stevens & Sons, 1990.
21. Ian Walden and Nigel Savage, 「The Legal Problems of Paperless Transaction」,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9.3.
22. Ian Walden(ed.) EDI and The Law, Blenheim Online, 1989.
23. Kurt Gronfers, Cargo Key Receipt and Transport Document Replacement,